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주현

전화 031-739-4250 / 팩스 031-739-4555

보도자료

2022. 5. 30.(월)

제 목

현직 경찰간부의 사건무마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 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※ '22. 5. 30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부패·강력범죄형사부(부장검사 박건욱)는 오늘(5. 30.) A경찰서 재직 당시 사건무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간부 甲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, 공여자인 乙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경찰이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,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안이 뇌물죄임을 밝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(알선수재)죄로 인지하고 甲을 직구속 하였음

※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죄는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특별규정

I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① 피고인

- 甲(59세, B경찰서 경감), 乙(79세, 무직)

② 공소사실 요지

- [甲] A경찰서 재직 중인 '17. 11.경부터 '18. 3. 17.경까지 그 지위를 이용하여 乙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의 무혐의 처분 알선 명목으로 乙로부터 4회에 걸쳐 1,400만 원을 교부받아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에관한법률위반]
- [乙] '17. 11.경부터 '18. 3. 17.경까지 위와 같이 甲에게 1,400만 원을 교부하여 [뇌물공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에관한법률위반]

II

주요 수사 경과

- '21. 9. 2. 경찰, 甲·乙 불구속 송치(청탁금지법위반)
- '22. 1. 12. 검찰, 甲 특정범죄가중법위반(알선수재) 및 乙 뇌물공여 인지
- '22. 1. ~ 5. 검찰,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영장, 통신영장 집행
- '22. 5. 20. 검찰, 甲 구속영장 청구
- '22. 5. 24. 甲 구속영장 발부
- '22. 5. 30. 검찰, 甲 구속 기소, 乙 불구속 기소

III

수사 의의

-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간부의 뇌물수수 범행을 밝힘
 - 경찰에서는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송치하였으나,
 - 검찰에서, 송치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, 추가 수사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甲이 사건 무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냄

○ 직접 보완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

- 검찰은, 추가 압수수색으로 혐의 규명에 필요한 증거인 甲의 문자메시지 (금품수수 후 乙에게 무혐의 처리를 약속하는 내용)를 확보하고, 제보자 진술 및 甲의 자필확인서(사건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)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등,
- 적극적인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송치된 범죄사실에 가려져 있던 사건의 실체를 밝힘

앞으로도 검찰은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부패범죄,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습니다.